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67

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문금주·서삼석·박해철

주철현 · 송옥주 · 이원택

문대림 • 이병진 • 조인철

김문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 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·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 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, 수산정책 홍보, 어촌계원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큰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.

반면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임 기 중에 매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.

이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,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의 지원) ①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어촌계장의 임기 및
	활동비의 지원) ① 어촌계장의
	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
	로 정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	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
	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
	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
	비를 지급할 수 있다.